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68
----------	-------

제출년월일 : 2023. 5. 18.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각종 위원회 중복제한에 관한 사유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진
 -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인재후보군 제도 운영 근거 및 시 소속 공무원 수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 전문성 제고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 감사관-12755(2022.10.26.)와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에 따른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사항 반영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시 중복제한 검토사항 추가 (안 제4조)
 -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 명시
- 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정 추가 (안 제5조)
 - 인재후보군 제도 운영 근거 및 시(市) 소속 공무원 수 제한 규정 추가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규정 (안 제6조의2)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의 사적인 이해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개정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3. 3. 22. ~ 4. 11.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 4]

○ 방침결정문 : [붙임 5]

[붙임 1]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를 “(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하여야 한다.” 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괄부서장은 위원 인재후보군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를 “(위원의 해촉)” 으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위원의 제척 등)” 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감정하거나 하였던 경우 또는 자문에 응하거나 응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전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 본인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7. 위원 본인이 해당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자치행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윤 충 오
	담당·팀장 직위·성명	자치행정팀장 김 민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문 아 름 (행정 3444)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총괄관리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와 <u>협의하여야 한다.</u></p> <p>② <u>총괄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 ① ----- ----- ----- <u>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는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 <u>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u></p>
<p>제5조(위원의 위촉) ① ~ ③ (생략) <u><신 설></u></p>	<p>제5조(위원의 위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괄부서장은 위원 인재 후보군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생략) 제6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u>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u></p>	<p>제6조(위원의 해촉)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u>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자문에서 제척된다.</u></p>

현행	개정안
<p>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 심의, 의결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p> <p>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p> <p><신설></p>	<p>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u></p> <p>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p> <p>3.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거나 있었던 경우</u></p> <p>4.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하거나 하였던 경우 또는 자문에 응하거나 응하였던 경우</u></p> <p>5. <u>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p> <p>6. <u>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u></p> <p>7. <u>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u></p> <p>② <u>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u></p> <p>③ <u>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에 응하는 행위를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④ <u>시장은 위원이 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